

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9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지원사업의 명칭을 정비하고, 지원대상과 위탁대상을 구분하여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사업 명칭 정비(안 제4조)

- (당초) 근로자의 날 관련 행사 → (변경) 노동절 관련 행사

나.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(당초) 제3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

(변경)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,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근로자의 날”을 “노동절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제3조의 기관 및 단체에”를 “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사업 및 예산 지원 등) 시장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제4조(사업 및 예산 지원 등) 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근로자의 날</u> 관련 행사	1. <u>노동절</u> -----
2. ~ 9. (생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사업의 위탁) 시장은 노사 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<u>제3조의 기관 및 단체에</u> 위탁할 수 있다.	제5조(사업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</u> <u>이나 개인에게</u> -----.

관계법령

□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

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, 이 날을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생 략
2. “민간위탁”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3. ~ 7. 생 략

소 관 부 서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이 호 정
	팀 장	황 병 현
	담 당 자	정 경 환 (480-6204)